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1년 1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01년 2월 2일

3. 제안이유

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나.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규정하고 제2조제2항은 삭제하여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 조례는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시장사업, 도축장사업등 11개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하도록 한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을 조례로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1993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시 법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2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본조례의 근거가 되는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금까지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붙임 :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